

이사회 규정

2023. 05. 02. 제정

2024. 01. 25. 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OCI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고 한다)의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4조 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제5조 (의장)

- ① 이사회 의장은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.
- ②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 유고시, 이사로 먼저 선임된 이사가, 선임된 일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6조 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경우에 따라 이사회에서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7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 소집은 회일 3일전까지 각 이사에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9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, 상법 제397조의2(회사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) 및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 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가. 주주총회의 소집,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허용, 영업보고서의 승인, 재무제표의 승인
- 나. 정관의 변경
- 다. 자본의 감소
- 라.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·이전, 해산, 합병(피합병 포함), 분할·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 등
- 마.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
- 바.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사. 이사의 보수, 선임 및 해임
- 아.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
- 자.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- 차. 주식배당 결정,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, 주식의 소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카.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
 - 단일 거래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
 - 해당 사업연도 중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
- 타.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, 폐지, 위임사항 등
- 파.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항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가.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나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다. 공동대표의 결정
- 라.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
- 마. 중요한 사규의 제정 및 개폐
- 바. 공장 및 해외 현지법인(회사가 직접 출자한 회계상 연결 대상인 법인)의 설치, 이전 또는 폐지, 지점, 사무소, 출장소의 설치, 이전 또는 폐지
- 사. 간이주식교환,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주식교환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

- 아.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- 자. 준법지원인 임면 및 준법통제기준 제·개정
- 차. 내부회계관리규정 제·개정

3. 출자 및 투자에 관한 사항

- 가.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15 이상의 출자(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함. 이하 같음)
- 나.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15 이상 또는 당해법인의 지분이 30% 미만인 되게 하는 출자지분의 처분
- 다.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신규시설 투자, 시설증설, 별도 공장의 신설
- 라. 사업계획 심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출자 및 투자 등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

4. 회사의 경영, 재산 등에 중요한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의 양수도, 기술도입 및 이전, 기술제휴에 관한 사항

5. 신주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의 부여

6. 사채의 발행. 다만,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종류 및 금액을 정하여, 대표이사에게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

7. 준비금의 자본전입

8. 결손의 처분

9. 일정액 이상의 자금차입 및 보증행위. 다만, 그 기간연장 및 금융기관 변경은 대표이사가 결정한다.

가.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차입 및 여신한도 약정 체결

나.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15 이상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

다.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한 자금차입 및 보증행위

10.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및 질권의 설정. 다만, 차입조건에 따라 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.

11. 회사의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

가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 내부거래로서 단일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금·유가증권·자산의 제공 또는 거래(결의 후 주요내용의

-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나, 거래금액 등이 당초에 결의한 것보다 20% 미만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는 제외한다. 아래 나목의 경우에도 같다)
- 나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 내부거래로서 분기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상품·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
 - 다. 상법상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로서 단일 거래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% 이상인 거래
 - 라. 상법상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로서 해당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%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

12. 이사 등에 관한 사항

- 가.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- 나. 타회사(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)의 임원 겸임

13. 기타

- 가.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나. 전무 이상 재직 후 퇴임한 전 임원의 고문 선임
- 다. 전무 이상 미등기임원의 (재)선임, 해임
- 라.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마.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연간 계획 승인

14. 단 3호 및 9호의 이사회가 기승인한 건을 해당 호 승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%미만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사업계획 대 실적 현황
2.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사업계획 대 실적 현황(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자회사 및 관계회사는 제외)
3. 출자 및 투자 현황
4. 차입금 및 보증 현황
5. 주요 신제품의 개발 및 출시에 관한 사항
6. 직원의 연간 채용계획

7. 급여체계, 상여, 복리후생제도 및 인센티브 제도 주요 변경 사항
8.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
9. 투자회사의 경영,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관한 사항
10.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11. 손해배상 청구 등 중요한 소송의 제기, 확정
12. 벌금, 과태료 또는 추징금 등의 부과
13. 특별손실 또는 특별이익의 발생
14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15.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

제11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내부거래위원회, 감사위원회, ESG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(감사위원회 제외)는 결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정한 결의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는 재의결할 수 없다.
- ⑥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12조 (위원회 의결의 효력)

- ①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- ②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재결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는 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회 결의사항이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

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3조 (관계인의 출석)

-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 및 각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4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15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의사록은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16조 (간사)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이사회 지원 부서 담당 임원 또는 담당 부서장이 되며,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의사록 작성을 포함하는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
제17조 (규정의 개정 및 우선적 효력)

- ①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- ② 각 위원회의 규정이 이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, 이 규정이 정관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제18조 (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)

이사회 및 위원회의 운영개선 등을 위하여 회사는 이사 또는 위원에게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